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813호

나. 발 의 자 : 김정 의원 외 12명

다. 발의일자 : 2025년 5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2. 제안이유

- 미술관의 자료수집은 작품 연구의 수준과 전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자 미술관의 경쟁력을 드러내는 요소로써 서울시립미술관은 3년마다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고 있지 않아 주요 정책이 결여되었기에, 정책 추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부 내용을 신설
(안 제21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 우수한 미술관 자료를 확보·소장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집행을 도모하고자 발의 되었음.

나.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 구체화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2010년도부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소장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규정¹⁾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중기 소장작품 수집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 ① 관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활한 수집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미술관자료 수집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현황>

2025년 6월 기준

계획명	수립년월
서울시립미술관 중기 (2010-2012) 소장작품 수집 계획	2010. 1.
서울시립미술관 중기 (2012-2014) 작품수집 실천 전략	2012. 2.
서울시립미술관 중기 (2015-2020) 소장작품 수집 계획	2015. 4.
서울시립미술관 중기 (2020-2023) 소장작품 수집 계획	2020. 11.
서울시립미술관 중기 (2024-2026) 소장작품 수집 계획	2024. 2.

- 동 조례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시장에게 ‘중장기 미술관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통상적인 중기(3-5년)에 해당하는 평균 3년 주기로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립미술관은 사실상 통상적 장기(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미술관 자료수집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황에 맞는 조문 제목으로의 개정이 요구되는 바임.

- 또한 현재 동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 수립할 수 있는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핵심 정책의 부재로 인한 변동과 혼선 등 시행상의 취약성을 초래하고 있음.

실제로 2010년부터 수립 및 시행되어 온 미술관자료 수집 관련 계획에서도 연도별로 제목 및 주요 내용·구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의 핵심 정책을 세부 항목으로 명시하여 규정 시행의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1조제2항)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21조(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의 수립) 시장은 우수한 미술관자료를 확보, 소장하기 위하여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우수한 미술관자료를 확보, 소장하기 위하여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관자료수집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장된 미술관자료의 수집현황 분석 3. 수집전략 구축 및 수집제도 개선 방안 4. 그밖에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동 개정안은 제21조의 조문 제목인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평균 수립 및 시행 주기인 3년에 맞추어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 우수한 미술관자료의 확보·소장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내용을 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함.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서의 위임이 없으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²⁾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벌칙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치사무 내의 범위이므로 규정 신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2)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또한 동 개정안은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요 내용이 결여된 정책의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및 지속성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정책 실행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나아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현재 신규 분관의 개관이 진행³⁾됨에 따라, 향후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 수립에 분관별 특성과 분석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김예영(2180-8114)
------	----------------	-------	----------------

3) 2025년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신규 분관 개관 일정

-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 2025. 05. 29.
-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예정) : 2025. 11. 04.

의안번호
2813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김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없음
주요내용	〈제안 이유〉 ○ 시립미술관은 3년마다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나, 동 조례에 자료수집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추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 입법 요지〉 ○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의 조문제목 변경 및 수립 세부 내용 신설(안 제21조제2항)		
추진경과	○ '25. 5. 26.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김경 의원 대표발의) ※ 발의자: 김경, 아이수루, 유정희 등 13명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현재 시립미술관은 동 조례 제21조(중장기 자료수집계획 수립)에 근거, 소장작품 수집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중임 [소장작품 수집 계획 수립현황(2010~현재)] ◦ 서울시립미술관 중기(2010-2012) 소장작품 수집 계획(2010. 1.) ◦ 서울시립미술관 중기(2012-2014) 작품수집 실천 전략(2012. 2.) ◦ 서울시립미술관 중기(2015-2020) 소장작품 수집 계획(2015. 4.) ◦ 서울시립미술관 중기(2020-2023) 소장작품 수집 계획(2020. 11.) ○ 동 개정조례안은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21조제2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의 수립 →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의 수립 ○ 통상 조례상 명시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3~5년으로, 현행 ‘중장기’ 계획 수립 주기(3년)와 일치하므로 조문 제목 변경이 적절하며, ○ 기본계획 수립시 세부항목으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현황분석,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체계성과 일관성 확보, 실행력 강화, 정책의 지속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함 ※ 주요 입법 요지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 완료		
대응방안	○ 이견 없음		
상 임 위 처 리 결 과			
담당부서	박물관과	팀장 박성은(☎2133-4183)	담당 정익승(☎2133-4237)